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434
----------	-------

발의연월일 : 2026. 4. 20.

발 의 자 : 이헌승 · 김상훈 · 서지영
김선교 · 박덕흠 · 김승수
성일종 · 유용원 · 윤상현
이종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과 동일한 종류와 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도록 하는 등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의 대규모 오지급 사고가 발생하는 등 여전히 가상자산사업자의 실시간 잔고관리, 위험관리 체계 등의 미비점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의 잔고를 주기적으로 검증하도록 하고 가상자산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7조제2항, 제9조의2 신설 등).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위탁받은 가상자산의 종류 및 총수량과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의 종류 및 총수량과의 상호일치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2장에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위험관리기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제때에 인식·평가·감시·통제하는 등 위험관리를 위한 기준 및 절차(이하 “위험관리기준”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위험관리기준에서 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 중 “제7조를”을 “제7조제2항 전단 또는 제3항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천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주기적으로 상호일치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의2를 위반하여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2. 제7조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적법하게 보관하지 아니한 자

3. ~ 8. (생략)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

하여야 한다.

② 위험관리기준에서 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과태료) ① -----

-----.

1. (현행과 같음)
2. 제7조제2항 전단 또는 제3항을-----

3. ~ 8.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주기적으로 상호일치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의2를 위반하여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

· 정수한다.

-----.